

#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7
----------	-----

발의년월일 : 2005. 5. 23.

발 의 자 : 송정현 의원 외 5명

## 1. 개정이유

2005년 3월 28일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운영의 능률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개정(안 제3조)

## 3. 본 문 : 덧붙임

## 4. 참고자료

-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

##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주민지원과”를 삭제 하며, “사회복지과” 다음에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삽입하고,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건설도시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 하고,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농업지원,축산)”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 축산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총무위원회</p> <p>    기획감사실, <u>자치행정과</u>,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u>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2.산업건설위원회</p> <p>    환경과, 녹지공원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u>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농업지원,축산)</u>,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총무위원회</p> <p>    기획감사실, <u>행정과</u>,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u>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u>, 보건소, <u>관광지관리사업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2.산업건설위원회</p> <p>    환경과, 녹지공원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u>재난안전관리과</u>, <u>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농업지원과,축산과)</u>,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